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에너지절약협력과 이승렬 과장(02-2110-3935), 신용민 사무관(4873)

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관련 효력정지(가처분) 결정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□ 서울행정법원이 금일(6월 24일) 대중 골프장 36곳이 제기한 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 조치에 대한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 정지되었음

□ 지난 3월8일부터 시행 중인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고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임

□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골프장(대중 골프장 36곳)의 야간 조명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나,

○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전까지 단속을 일지 중지키로 하였음

○ 다만, 골프장 이외의 기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임

□ 지식경제부는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적절성을 입증하여 금번 조치가 적법한 조치였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도록 할 계획임